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	의	장	
람					



제647호 2010. 8. 02. (월)

고	시							
○ 고시	제2010-5)/ O = .	010 개발제 [정 고시]					목별 평균 ^太 2
공	고							
○ 공고	제 2 010-5	· 28호 [을	量산광역시 -	북구 국공립	어린이집 위	탁운영자	모집 공고]	3
O 공고	² 제2010-5	30호 [2	011년도 울~	산광역시 북	구 사회단체	메보조금 지·	원계획 공고	2]6
			.	vi - 11	u •			
			【 ^c	간 내	€ 】			
□ 북	구 전자공	당보는 매주	월요일 발	행되오니 공	공보게재 의	의뢰는 매주	트 금요일 역	오전까지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□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□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								
⇒ 구 홈페0지(http://www.bukgu.ulsan.kr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미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								
	I		1					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:울산광역시 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-57호

고 시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0. 8. 2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(개발제한구역 제외)

(단위: 원/m²)

연번	지 목	개별공시지가 평균치	연번	지 목	개별공시지가 평균치
1	전	151,052	15	철도용지	48,915
2	답	95,747	16	제 방	44,112
3	과 수 원	160,503	17	하 천	46,768
4	목장용지	85,917	18	구 거	86,274
5	임 야	8,249	19	유 지	57,529
6	광 천 지	-	20	양 어 장	-
7	염 천	-	21	수도용지	81,450
8	대	464,366	22	공 원	118,997
9	공장용지	190,862	23	체육용지	406,927
10	학교용지	326,165	24	유 원 지	211,272
11	주 차 장	368,654	25	종교용지	243,295
12	주유소용지	492,068	26	사 적 지	19,800
13	창고용지	353,560	27	묘 지	115,202
14	도 로	84,820	28	잡 종 지	185,895

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
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.

2010년 8월 2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1. 위탁운영 대상시설

시 설 명	소재지	시 설	규 모	보육정원	비고	
		대지	건물			
숲속어린이집	양정동산 109번지	500 m²	301.82m²	41명	영아전담	

- 2. 위탁운영기간 : 2010. 11. 1 ~ 2013. 10. 31(3년간)
- 3.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
 - 가.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
 - 나.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 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
 - 다.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
- 4. 위탁운영 조건 :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
- 5. 신청서류 접수
 - 가. 공고기간 : 2010. 8. 2(월) ~ 2010. 8. 23(월)(22일간)
 - 나. 접수기간 : 2010. 8. 16(월) ~ 2010. 8. 23(월)(8일간)
 - ※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
 - 다. 설명회 개최
 - 개 최 일 : 2010. 8. 11(수) 14:00,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
 - 주요내용 :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 등 설명
 - ※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단체 및 법인(개인)이 짐
 - 라. 접수장소 :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(울산광역시북구청 4층)
 - 마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공휴일 접수 불가,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)

6. 신청서류

- 가.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
- 나.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시설장)
- 다.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시설장)
- 라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
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
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
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)
- 마.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
- 바.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
- 사.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(법인)
- 아. 등록증,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)
- 자.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(법인 및 단체)
- 차.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포함. 개인)
- ※ 신청서류는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(상철)하여 15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4부)

7. 위탁자 선정기준(배점)

- 운영체의 공신력(10),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(10),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 장 전문성(30), 보육시설 운영 계획(40), 운영체의 재정능력(10)

8.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

가. 결정방법 :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나. 통 지 : 개별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신청자는 심의당일(추후통보) 울산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(10분/프리젠테이션 가능) 하 여야 하며 질의(10분)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.
 - ※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(포기자)로 간주함.
 - *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(보육시설 위탁신청서 기재된 시설 장)
- 나.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- 다.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.
- 라.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마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.
- 바.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.
- 사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.
- 아.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함.

단, 불가피한 사유(사고·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)는 제외

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문의전화: 사회복지과(여성아동팀) 052-219-7343.7353 FAX 052-219-울산광역시

201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『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8. 2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기간: 2011. 1. 1. ~ 12. 31.(1년간)

2. 지원대상

-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,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대상단체
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 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 -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
 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 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
 -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3. 지원범위

-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,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(자본적 경비 제외)
- 지원 대상사업 유형

- ▶ 구정시책 분야 : 친환경 무상급식의 기초마련,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
- ▶ 시민의식개혁 분야 : 안보의식 고취, 청소년상담, 청결, 공동체의식 함양 등
- ▶ 문화·체육·보건·환경 분야 : 전통 및 문화예술 행사, 지역주민대상 체육활동,건강증진사업,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등
- ▶ 사회복지 분야 : 장애인, 여성, 아동, 노인, 보육 등
- ▶ 기타 :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지원제외 대상사업
 - ▶ 신청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
 - ▶ 단체설립 목적과 상이한 사업
 - ▶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·시비 등 보조금 지원 결정된 사업
 - ▶ 보조금으로 재 보조하는 사업
 - ▶ 단체가 선심성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 (기념품구입, 불우이웃돕기 등)
 - ▶ 구체적 사업 목적이 없는 자본형성적인 사업 (단체사무실 비품구입 등)
 - ▶ 회원의 단합대회, 정기총회 등 단체내부 행사위주사업

4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-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: 2010. 8. 17 ~ 8. 31, 18:00한 (공휴일 및 주말 제외)
-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
 - 교부처 : 기획감사실, 사업주관부서, 동주민센터,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
 - 접수처 : 사업주관부서
- 제출서류
 - 사회단체 소개서 2부
 -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
 -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
 -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2부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(별도 요구시) 2부
 - ※ 신규 신청 단체 :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2부
-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직접접수 [우편은 2010. 8. 31(화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]
 - 주 소 : ♠ 683-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(사업주관부서)

5. 지원사업 선정 방법

○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분은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

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- 선정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, 사업내용의 적정성, 지역사회 기여도, 사업수행 능력, 자부담 능력, 단체의 특성, 법령 및 조례의 규정 사항, 최근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- 심의결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

6. 보조금 교부, 정산 및 사업평가

- 보조금은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
-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구 보조금결제전용 카드 사용하여야하며,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・정산관리가 원칙임.
-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며,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활용

7. 기 타

○ 본 공고문 외에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.

(대표전화 289-9999, 기획감사실 219-7203)

○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